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56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2.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삭제
-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한 용어 및 문장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함(※ 재입법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제19조¹⁾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1. 10. 19. 제정, 2022. 1. 13.시행)이 별도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비용추계, 조례와 규칙의 공포, 입법예고와 관련한 조문변경²⁾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1)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조례·규칙심의회)제1항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³⁾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⁴⁾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조례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예고방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고 공고의 방법을 강남구 홈페이지로 명문화한 것임.

- 안 제11조(공청회)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공고 수단을 구체화하였고

- 안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8조⁵⁾에 따라 구청장은 ‘의안의 발의’가 아닌 ‘의안의 제출’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2항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로 개정하려는 바 의안은 제출>회부>상정⁶⁾ 순으로 심의하는 바 제출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7조(공포문), 제19조(공포방법), 제22조(규칙 등의 제출 등)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변경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제16조에 ‘구의회’로 약칭이 되어 이를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는 제24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2022.1.7.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24조가 이미 삭제되어 제6장에 규정사항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5)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6) 상정: 위원회 또는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이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부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회부: 안건 심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에 안건을 송부하는 행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5조(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 근거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의 의견은.
- 주민들이 보기 쉽게 조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판단한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안 제14조 중 조문의 위원회 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함께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6호

제안일자 : 2022.2.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기재한 조례·규칙심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 규정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
- 약칭 되어진 조례·규칙심의회 명칭의 정식 명칭 기재(안 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발의” 를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심의회”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조례·규칙심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조례·규칙심의회)</p> <p>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u>조례·규칙심의회</u>를 둔다.</p> <p>② 조례·규칙심의회 의 구성, 심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영 제28조 등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5조(조례·규칙심의회)</u>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u>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u>조례·규칙심의회</u>의 구성, 심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u>발의</u>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 ----- ----- <u>제출</u> ----- ----- ----- ----- ----- -----</p>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6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나.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삭제

다.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한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

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함

(※ 재입법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8조 등을 준용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보 및 인터넷”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신문·방송”을 “홈페이지·신문·방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3”을 “법 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

칙심의회에 상정하기”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로,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영 제30조에 따라 구보”를 “구보”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를 각각 “구의회”로 한다.

제6장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규칙심의회는 구성, 심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영 제28조 등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5.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

6.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
--.

② -----
----- 영 제28조에 따라
-----.

제8조(예고방법) ① -----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② (생략)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하여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 7. (생략)

③ ~ ⑦ (생략)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공포문) ①·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청회) ① ----- 「행정절차법」 제45조-----

--.

② -----

----- 홈페이지·신문·방송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법 제78조-----

-----.

② -----

-----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기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포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9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2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이하 “규칙 등” 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공포일·발령일·고시 후 10일 이내에, 규칙안의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규칙 등을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

제19조(공포방법) -----

----- . --- 법 제32조제6항-----

----- 구보-----

-----.

제22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

----- 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7급 차경미 (02-3423-5483)